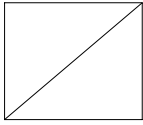


공 식	비공식
	○



선진국 중기재정계획 현황조사 보고서

- 캐나다 / 미국 -

2007. 6

재 정 운 용 실

“ 동 자료는 중기재정과정에서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공식자료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증기출장 개요	1
II. 캐나다 재정제도 조사결과	3
1. 예산제도 개요	3
2. 예산편성 방식	5
3. 예산관련 주요서류	14
4. 캐나다 재정제도 변화	17
5. 증기재정계획 제도	20
6. 기타 Q&A	22
III. 미국 재정제도 조사결과	24
1. 예산제도 개요	24
2. 예산편성 방식	26
3. 증기재정 계획	31
4. 기타 방문기관별 주요내용	34
5. 기타 Q&A	39
IV. 정책함의	48
1. 캐나다	48
2. 미국	50
<참고자료> 증기재정계획관련 출장질문서	51

I. 중기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선진국의 재정정책 현황 파악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 마련

2. 출장기간 및 출장자

- 출장일정 및 국가
 - 일정 : '07.5.27 ~ 6.4일 (9일간)
 - 출장국 : 미국/캐나다
- 출장자 : 기획예산처 김상규 기금운영계획과장 등 4명
(KDI 1명 별도)

	이름	소속	비고
1	김상규	기금운영계획과	3급
2	김영임	중기재정계획과	5급
3	최재혁	국방재정과	5급
4	박명금	교육문화재정과	5급
5	송준혁	KDI	박사

3. 방문기관 및 면담자

- 캐나다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 Maude Lavoie, Senior Economist, Fiscal Policy Division,
Economic and Fiscal Policy Branch
 - Shaun Peddie, Coordinator, Expenditure Analysis and
Forecasting, Fiscal Policy Division

□ 미국

- 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Art Stigile, Chief, Budget Review Division, Budget Concepts Branch
- 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Elizabeth H. Curda, Assistant Director, Strategic Issues
 - Susan J. Irving, Ph.D, Director for Federal Budget Analysis, Strategic Issues
- 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 Edward C. Blau, Budget Analyst, Scorekeeping Unit
 - Jeffrey M. Holland, Chief, Projection Unit, Budget Analysis Division
 - Melissa Merson, Director of Communication

□ UN 대표부

- 조현,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
- 설경훈,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 참사관
- 임정택,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1등 서기관

II. 캐나다 재정제도 조사결과

1. 예산제도 개요

① 예산의 종류

본예산안(Main Estimates) 외에 추경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 준예산안(Interim Supply) 제도

○ 추경예산안

▪ 시기 : 필요시 언제든지 제출 가능하나 관례적으로 일년에 두 번 개별적으로 제출(12월, 3월)

- 6월 본예산안 통과시 추경예산안도 함께 승인

▪ 사유 : 새로운 지출소요나 재원을 재배분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 준예산안

▪ 본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통과될 경우 그 사이에 필요한 지출을 승인 (추경예산과 함께 통과)

② 예산의 형식

하원에서 본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세출예산법(Appropriation Act)이라는 법적 형태

○ 세출예산법에 따라 정부는 의회승인 한도내에서 세입 및 지출할 수 있는 단년도 권한 보유

③ 회계연도

□ 회계기간 : 1년 단위

□ 회계연도 개시 : 매년 4월 1일

(회계연도는 January가 속한 연도를 기준)

※ 예) 2006회계연도는 2006.4월~2007.3월이며, 의회 사전협의 과정
(9월말~12월중순), 예산 승인과정(2월말~ 6월말)

④ 예산편성 일정

□ 행정부 예산절차

- 3월말 : 각 부처가 작성하는 우선순위 보고서
- 6~9월 : 내각 회의(Review of Priorities by Cabinet)
- 2~3월 :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 행정부 예산과정의 산물이 2월 중 예산연설과 함께 제출하는
Budget(예산전략문서)과 Estimates(세부예산서,3월1일 이전)

□ 의회에서의 예산절차

- 9~12월 : 의회와 내각이 상호 협의를 하는 예산전 과정
- 2~6월 : 예산정책의 의결이 이루어지는 예산승인과정

→ 의회는 대개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1일까지 본예산안(Main
Estimates)을 통과시키지 않고, 본예산안 통과 이전까지의 소요
를 담은 임시예산(Interim Supply)을 3월 26일경 승인

- 이후 본 예산안은 6월 중순에 통과시키는 것이 관행화

2. 예산 편성 방식

1] 행정부 편성과정(Budget Cycle)

□ 내각 회의(Review of Priorities by Cabinet)

- 6월, 9월중 두 차례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장관들이 재정상황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고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교환

* 각 부처가 작성하여 TBS 위원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The Reports on Plans and Priorities를 바탕으로 내각회의 진행 (3월)

□ 최근의 경제 및 재정동향(Economic and Fiscal Update)

- 10월경에 재무부가 향후 5년간에 대한 경제 및 재정상황에 대한 전망치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 향후 예산심의의 기초자료로 활용

-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은 민간 및 재무부에서 각각 담당

□ 예산심의 절차(Budget consultation process)

- 행정부는 내각위원회,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추밀원(Privy Council Office), 재무부, TBS 등을 중심으로 예산전략에 대해 검토

- 재무부는 예산협의서(Budget Consultation Papers)를 배포하여 재무위원회, 주정부의 재정담당자 및 일반 및 이해당사자와 협의

- 내각의 정책위원회는 부문별 정책 및 사업우선순위를 권고하고 재무위원회는 향후 예산에 대한 재정전략에 관한 보고서 작성
- 예산관련 부처와 개별 부처는 예산 감축 및 재원 재배분에 대해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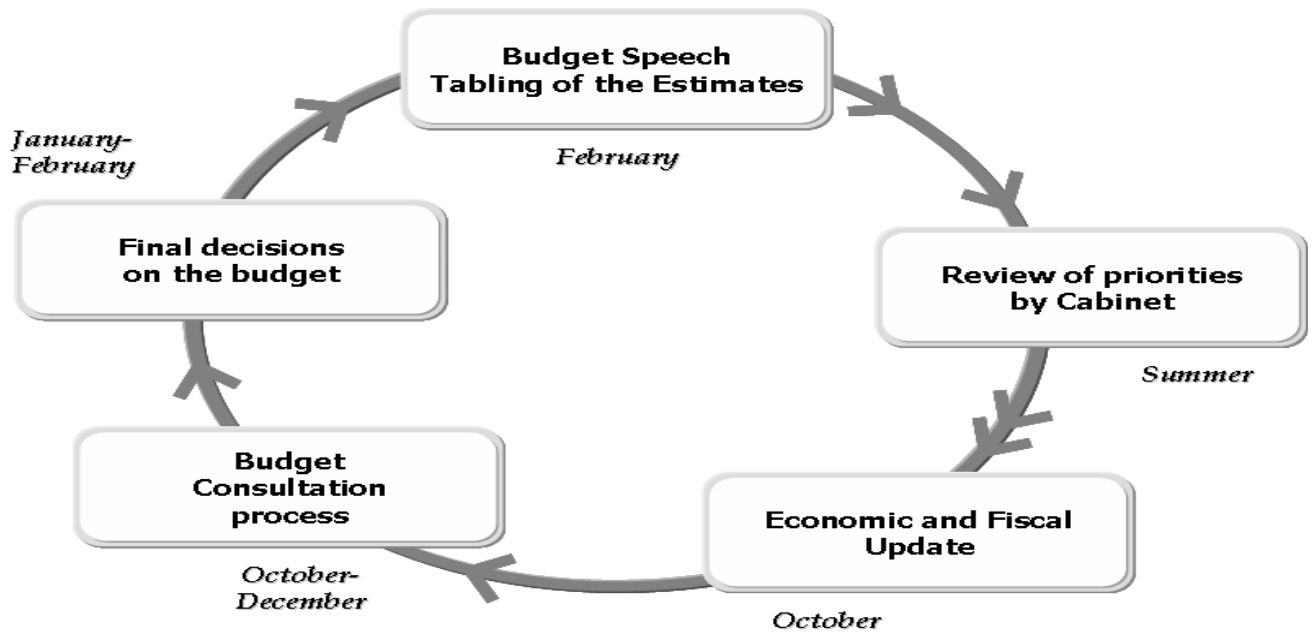
□ 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Final decisions on the budget)

- 내각은 재정목표, 신규 사업 및 지출 감축 내용 등이 포함된 예산전략을 검토하고 재무부 장관 및 수상이 예산을 최종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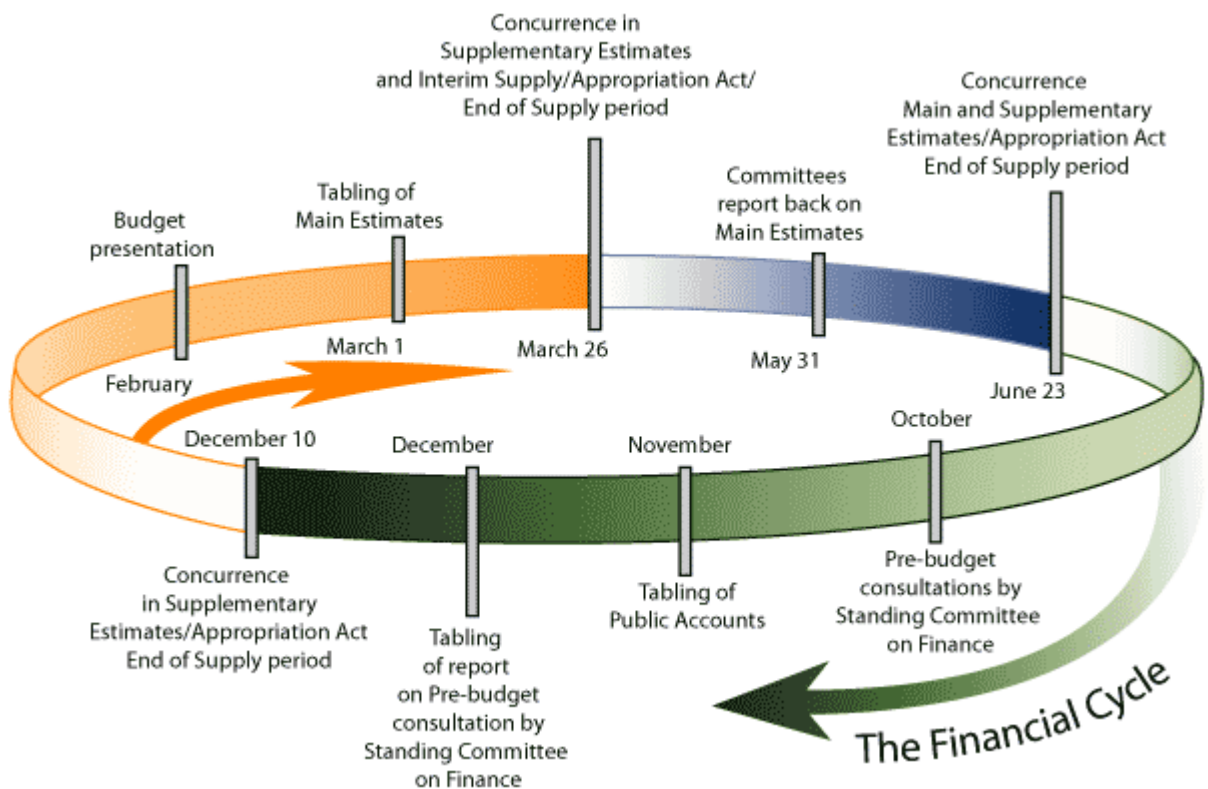
□ 예산연설 및 예산안 작성(Budget speech and Tabling of the Estimates)

- 재무부장관이 예산연설을 하면서 **Budget**을 제출하고,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예산안을 3월 1일 이전에 의회에 제출

[그림] 예산주기(행정부 기준)



[그림] 예산주기(의회 기준)



<참고> 내각과 의회의 주요 활동

일정	주요내용	주요서류 및 비고
6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은 1차 Cabinet Retreat ○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각 부처가 제출한 RPP를 검토하고 6월 말까지 보고서 제출 	
9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이 2차 Cabinet Retreat ○ 의회의 하원 재정 상임 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inance)는 예산정책에 대한 청문회(hearing) 개시 	
10월 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부 장관이 재정상임위원회에 정부의 광범위한 예산정책 현안을 발표하고 Economic and Fiscal Update 보고서를 발간 	Economic and Fiscal Update
10월말/ 11월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위원회 사무국(TBS) 위원장이 Department Performance Reports를 의회에 제출 	Department Performance Reports
11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상임위원회는 예산정책에 관한 청문회 종료 	
12월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상임위원회는 Pre-Budget Consultation Report 작성 	
12월 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경예산 법안에 대한 의결 하원은 예산정책에 대해 토의 	
1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이 예산 전략을 검토 	
2월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 및 재무장관이 예산안 최종 결정 	
2월 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장관이 Budget을 의회 제출 	Budget
2월 말~3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위원회 사무국 위원장(TBS)이 왕실의견을 첨부하여 Main Estimates를 의회 제출 ○ 각 의회상임위는 “Estimates”심의 개시 	Main Estimates
3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BS 위원장이 각 부처를 대신하여 각 부처가 작성한 The Reports on Plans and Priorities를 의회에 제출 ○ 하원은 6월말까지의 임시예산(Interim supply)와 제출된 추경예산이 있으면 동시 승인 	The Reports on Plans and Priorities
예산 순기 시작 (4월1일~ 3월 31일까지)		
5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는 Estimates 심사 보고서를 제출 	* 법적사항은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 제출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원은 Estimates 심의 시작 	
6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원은 Estimates 와 제출된 추경예산이 있는 경우 함께 승인(Confidence Vote 성격) ○ 이는 정부가 의회승인 한도내에서 세입 및 지출할 수 있는 단년도 권한을 갖는 법안이 들어지는 것이고(Appropriation Bill)→상원이 동의한 후 하원으로 송부 	* 의회가 vote를 reject하는 경우 내각 재선거 필요

* Supplementary Estimates는 필요시 봄, 가을에 국회에 제출

② 지출한도 설정 및 조정 과정

□ 지출한도 설정을 위한 예산계획(Budget Planning) 단계

- 1단계(경제전망): 매년 가을 재무부는 약 20개 민간 경제전망 연구소의 전망치를 수집하고 재무부와 economic advisory group(중앙은행, 4개 민간 경제연구소)가 모여서 5년간의 경제전망치(economic assumptions)합의
- 2단계(재정전망): 민간 경제전망 연구소의 평균 경제전망치와 현재의 조세·재정정책을 기준으로 하여 National Accounts 기준의 상세한 재정전망(fiscal projections)
 - 이후 민간 경제전망 연구소와의 협의 하에 Public Accounts 기준의 재정전망으로 전환하고 Fall Economic and Fiscal Updates에 제시
- 3단계(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정단계): 응급예비비와 여분의 예비비(extra degree of economic prudence)를 통해 조정
 - 우발예비비(Contingency reserve): 경제전망의 오류 또는 법정 사업의 예기치 못한 비용증가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통상 30억달러 규모로 설정
 - * 동 예비비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 불용액은 각 연도의 국가부채 상환 용도로 사용
 - 경제적 여유분(Economic prudence): 향후 2년간 균형 재정수지 달성을 위한 예비재원
 - * 미사용시 조세감면이나 우선순위 지출영역에서의 지출 증대 및 채무상환 용도로 사용

□ 지출한도 설정 · 조정단계

- 연례 기준경비 조정(Annual Reference Level Update: ARLU) 과정
 - 각 부처는 매년 가을 재무위원회(Treasury Board: TB)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여 재량지출(non-statutory spending) 총액을 승인받는 과정
 - ARLU는 신규자금 승인요청과정이 아니고 이전에 발표된 정책의 재원 증감을 반영하는 과정
 - * ARLU는 부처가 승인된 사업을 계획기간(3년)동안 수행하기 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소요시간을 제시하는 예산문서
- 부처별 승인액수 합계가 지출한도 총액을 초과할 경우 TBS가 부처별 지출승인서를 검토하여 지출삭감 보고서 작성
 - TBS가 전체 지출보고서를 재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재무위원회가 이를 통합하여 재무부에 제출
- 신규사업에 대한 지출의 경우 재무부가 매년 재정수입과 지출전망을 통한 전망갱신과 신규여유자금에 근거하여 지출한도 조정
 - 정책위원회(신규지출)와 재무위원회(기존의 재량지출)의 사전 승인을 거치고, 의회는 조정대상(potential adjustment)을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수상과 재무부장관이 결정
- 부처별 지출한도는 총액으로 설정되며, 대부분 재량지출(non-statutory spending)에 적용
 - 총액한도 내에서 인건비 협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에 대비하여 compensation reserve를 설정하고, 부처는 지출한도 내에서 운영

- 지출한도 결정은 예산작성단계에서 결정되더라도, 회계연도 전 기간에 걸쳐 조정 가능
 - 지출한도 조정은 추경예산으로 상정하거나,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사업 수행을 통해 이루어짐
- 내각은 재정목표, 신규사업 및 지출감축 내용이 포함된 예산전략 검토한 후 총리가 예산(Budget)을 최종결정하고 TBS가 개별 부서와 합의하여 최종 예산안(Estimates)을 작성하여 의회 제출

3] 의회의 예산승인(Appropriation) 과정

- 10월경에 재무부가 향후 5년간에 대한 경제 및 재정상황에 대한 전망치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의회-내각의 사전 예산과정(10-12월)이 시작
 - 의회에서도 **Economic and Fiscal Update**를 기초자료로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정책에 대한 검토 및 청문회 개최
 - 각 부처 장관이 의회에 청문회 및 각종 상임위에 참석하여 정부예산을 설명
- 정부가 **Budget**과 **Main Estimates**를 제출하면서 의회 승인과정(2월~6월)이 개시
 - 의회는 지출규모를 운영비용, 이전비용, 자본비용으로 구분하여 승인하며, 각 비용 내에서는 자유롭게 재원 재배분 가능
 - 단, 이전비용에서 운영비용으로 이전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부처간의 재원 재배분도 의회 승인 요구 사항

④ 예산당국과 부처와의 관계

- 재무위원회 사무처는 ARLU를 위해 각 부처로 하여금 해당 부서의 지출계획을 검토한 보고서를 9월까지 제출 요구
- 지출부처가 기존 재량지출에 대해 재무위원회(TB)에 ARLU를 진행중 해당부처는 TBS의 Senior Management에게 의견 제시 가능
 - 부처와 TBS 사이 의견 불일치시 부처장관은 재정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요청가능하고 재정위원회가 최종 결정
 - 지출부처는 1년 중 언제라도 재정위원회에 “reference level” 증액 요청이 가능하고, 필요시 추경예산에 반영
- 지출부처 신규사업예산안은 운영위원회 승인 → 내각위원회에서 사전승인(approval-in-principle)→ 수상 및 재무장관 최종결정
 - 지출관리제도(EMS)하에서 장관/부처는 재원의 증액 요구시, 사전에 재배분을 통한 모든 재원 조달 방안 검토를 입증할 필요
 - 재무부가 설정하는 총액 및 부처별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재원 재배분이 발생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해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 of cabinet)를 구성
 - TBS가 재원 재배분이 필요한 분야와 재배분 기준을 부처에 제안
 - FAA(Financial Administration Act)에 의해 부처는 승인된 지출 한도를 준수해야 하고, 결산보고서에 지출한도 초과사실 표기
 - 예산 당국은 부처의 재배분이 “건전성 및 안정”을 위협한다고 파악할 경우 부처 재원 재배분을 변경 가능
 - 부처 재배분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불일치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인 경우 TB와 내각은 해당 결정 무효화 가능

5] 행정부와 의회의 재정에 대한 권한

- 캐나다는 내각책임제 국가로서 내각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 하원에서 **Main Estimates**가 통과되면서 법률형식(Appropriation Act)으로 성립
- 예산법(Appropriation Act)에 따라 정부는 의회승인 한도내에서 세입 및 세출을 할 수 있는 단년도 권한 확보
- 재무위원회가 의회에 제출한 **Main Estimates**는 하원 위원회에서 검토 후 의결, 지출삭감 가능 (증액되는 경우는 없음)
 - 하원은 부처의 **reference level** 삭감만을 제안 가능(상원은 변경 불가)
 - 지출 증대 제안시 **Royal Recommendation** 필요
- 세출예산은 신임투표(Confidence Vote)적 성격으로 간주
 - **Budget** : Budget의 승인거부는 **Confidence Vote**로 연계
 - **Estimates** : Estimates중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Confidence Vote**로 연계 가능
 - * 하원위원회가 지출삭감 제안시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고 예산안 변경 요구 제안이 의회를 통과 → 해당 세출예산안은 무효, 행정부는 재선거 실시
 - ** 여소야대의 경우 의회가 지출한도에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
- 지출한도 총액 결정시 의회와 예산당국간 공식적 논의는 없음
 - 재무부 장관이“ **Economic and Fiscal Update**”로 사전예산 논의 개시
 - 하원 재무상임위원회는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부에 권고가능, 특정 정책 제안으로 지출한도 변경도 가능
 - 부처 관료들이 하원위원회의 질의에 답변함으로써 부처 지출 계획을 설명

3. 예산 관련 주요서류

① Economic & Fiscal Update

- 재경부(Ministry of Finance)는 5년간의 경제 및 재정 전망을 작성하여 10월경 의회에 제출
 - 경제 전망(Economic Outlook)은 민간 섹터가 작성(prepare)
 - * 재무부는 약 20개 민간 경제전망 연구소의 전망치를 수집하고 재무부와 economic advisory group(중앙은행, 4개 민간 경제연구소)가 모여서 5년간의 경제전망치(economic assumptions)합의
 - 재정 전망(Fiscal Outlook)은 재경부에 의해 작성(prepare)
- 경제 및 재정 전망은 다음 연도 Budget의 사전 토론의 기초 (basis)로 사용

<2006년 Fiscal Outlook Update>

(십억 \$)

	Actual	Projection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Budgetary revenues	222.2	229.4	238.0	245.4	253.9	264.6	276.8
program expenses	175.2	187.6	196.1	204.4	213.1	220.7	228.6
public debt charges	33.8	34.6	34.7	34.6	34.7	34.6	34.6
Total expenses	209.0	222.2	230.8	239.0	247.8	255.3	263.2
Underlying surplus	13.2	7.2	7.2	6.4	6.1	9.3	13.6
Government Fiscal Commitments		3.0	3.8	4.0	4.4	4.3	4.4
Planning surplus		4.2	3.4	2.4	1.7	5.0	9.2
Federal debt	481.5	478.5	475.5	472.5	469.5	466.5	463.5

② Budget Plan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유사)

- 당해연도 및 향후 2개 연도에 대한 예산전망, 정부의 재정 및 경제운영목표, 정책우선순위, 그리고 당해연도에 도입할 신규사업 등을 밝히고 정부가 이러한 정책들을 전반적인 재정계획하에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술

→ 정부가 발행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보고서(Strategic document)로서 정부의 재정적, 경제적, 사회적 우선순위가 표현

- Budget은 재정·경제 전망을 3년 시계로 제시(당해+ 향후 2년)
 - 1994년까지는 5년 시계로 전망했으나 Budget 전망 수치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2년으로 축소
 - 전망기간이 법적인 것은 아니며 정부에 따라 변경 가능
- Budget은 관행적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이나 의회의 승인(Approval) 필요
 - Budget에 대한 의결이 fail하거나 opposition motion이 채택되면 내각 재선출 필요(예산에 대한 의회 의결이 confidence vote 성격)
 - Budget에는 Fiscal Commitments*가 포함되어 있고,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정치적 구속력

※ Fiscal Commitments

- 재정증가율을 평균적으로 GDP증가율보다 낮게 설정함으로써, 재정수지 개선 노력
 - * 일반적으로 조세수입의 탄성치가 1보다 높은 수준으로 재정수지 개선효과
- 이를 통해, 매년 30억 달러 수준의 국가채무를 상환 계획
 - i) 경제 전망이 변화 및
 - ii) 긴급지출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최소한 균형재정 도달 가능

- 연방 채무를 '12년까지 GDP의 25% 수준으로 축소
→ '20년에는 자산을 포함하여 debt free한 상황 목표
- 연도별 국채규모 감소에 따른 이자 감소분은 조세부담을
축소로 국민들에게 환원 (Tax-back guaranett, 법제화 예정)

<2006 Surplus for Planning Purposes (Budget의 일부)>

(십억 \$)

	Actual	Projections		
	2005-06	2006-07	2007-08	2008-09
Budgetary revenues	222.2	232.3	236.7	243.5
Program expenditures	175.2	189.0	199.6	206.8
Interest on the public debt	33.8	34.1	33.8	33.7
Total expenditures	209.0	223.1	233.4	240.5
Planned Debt Repayment	13.2	9.2	3.0	3.0
Surplus Remaining			0.3	0.0

3 Main Estimates (단년도 예산안)

- 단년도 예산계획으로 기간별·사업별 지출의 세부사항 및 사업의 기대효과를 포함
 - 법적 의무에 따라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왕실 견해를 첨부하여 3월 1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
 - Estimates에는 부처와 기관의 내년도 지출계획뿐만 아니라 법정지출항목도 정보제공차원에서 포함
 - Estimates에는 new measure는 포함되지 않으며 new measure는 supplementary Estimates에 반영하여 의회 승인을 받음
- The House of Commons(하원)는 단년도 예산의 규모와 모든 지출의 목적을 승인 (Authorize)

4. 캐나다 재정제도의 변화

① 정책 및 지출관리제도(Policy and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 PEMS) : 1979년 ~ 1989년

- 재정적자 누적과 이에 따른 국가부채의 급증이 캐나다정부의 예산편성에 제약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부의 조직 및 예산 통제의 필요성이 확대
- 동 제도의 특징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의 도입과 정책과 예산의 조화를 강조한 것임.
 - 중기재정계획의 도입에 따라 재무부는 지출한도가 설정된 5개년 재정계획을 설계
 - 연방정부의 사업이 부서보다는 정책분야별(envelope)로 구분되었으며 내각에 정책위원회(Policy committee)를 신설하여 정부의 개별사업을 정부 전체적인 우선순위와 재원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기능을 부여
 - 또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정책예비비(policy reserve)를 도입하여 주로 신규사업 재원으로 사용
- PEMS는 부처장관들이 범정부 차원의 우선순위를 지킬 것이라는 유인구조의 오류와 중앙예비비(central reserve)가 신규재원 확보 수단이 됨으로써 캐나다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1989년 동 제도는 폐지됨.

② 지출관리제도(Expenditure Management System: EMS):
1995년 ~

- 신규 지출사업계획은 사업 목적과 예측되는 결과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재배분을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각 부처의 지출은 정기적으로 재검토(review)
 - 부처별로 4년마다 사업 프로그램을 검토
- 최종적으로 확정된 신규 사업은 Budget Planning에 통합
- 1989년 이후 정책 envelope을 폐지하고 재무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를 내각위원회(Cabinet committee) 산하기구로 편성하면서 하향식 통제 방식으로 전환
- 1995년 정부는 재정적자를 목표수준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일정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MS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비용 증가분의 충당은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으로부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충당
 - 신규사업 재원을 충당하였던 중앙예비비를 폐지하고 우발예비비(contingency reserve)를 도입하여 예기치 못한 비용 증가 및 경기후퇴에 따른 실업보험 지급 증가 등에 대비

- 중기재정 수립기간도 종전의 5년에서 당해 회계연도와 향후 2개 연도를 포함하는 기간으로 변경하여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
- 재정 및 지출계획의 공표,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의 할당, 주요 이해당사자의 예산편성과정에의 참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획-자원배분-성과관리에서의 유인제도
- 지출통제법(1992~1996), 지출관리제도 도입(1995) 이후 캐나다의 재정수지가 급속히 개선됨에 따라 국가부채 규모도 1996년 이후 감소 추세
- 1999년 재정수지의 흑자기조가 정착됨에 따라 재정목표 설정기간을 2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확장한 『최근의 경제 및 재정동향』 (Economic and Fiscal Update)을 발표
- 동 자료는 예산편성의 지침으로 사용되며 실제 예산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당해 회계연도와 향후 2년 기간으로 편성

5. 중기재정계획제도

□ 캐나다의 중기재정계획은 「Budget Plan」이 해당

○ Budget Plan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보고서 (Strategic document)

▪ 당해+향후 2년의 지출계획 뿐만 아니라 정부 자원조달 계획, 정부재정의 종합적인 포지션과 향후 정책방향 및 과거의 재정정책에 대한 종합 보고서

* 1994년까지는 5년 시계로 전망했으나 Budget 전망 수치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2년으로 축소, 그러나 전망기간이 법적인 것은 아님

▪ 세입전망을 분석하며 세제개편 등 세법 변경안에 대한 기술적 사항도 상세히 설명

→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국가재정현황 및 향후 자원배분계획에 초점을 둔 것에 비해 좀 더 포괄적

□ Budget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사실상의 정치적 구속력

○ 주요 신규사업은 Budget에 포함시켜 별도 승인

○ 기존 사업은 Estimates에 포함시켜 단년도 예산으로 처리

□ Budget에는 Fiscal commitments*가 포함되어 있고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정치적 구속력을 지님

* Fiscal commitments에는 GDP 성장률 이하로 세출확대 억제, 2012~13년까지 국가부채를 GDP대비 25%로 축소, 세금환급보장(Tax-back Guarantee)을 포함

* 우리나라는 각종 거시지표 및 국가채무, 재정수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나 Fiscal commitments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참고> 캐나다 중기재정계획

구분	캐나다
○ 정치제계	내각책임제
○ 중기재정계획명칭	Budget 의 일부
○ 제출형태	예산 서류의 일부
○ 법적사항 여부	X
○ 의회제출여부	O
○ 의회심의·의결	O(관행적으로 의결)
○ 구속력	정치적 구속력이 강함
○ 공개여부	O
○ 계획기간	3년 (당해연도+ 향후 2년)
○ 중기계획범위	일반예산(일반·특별)+투융자예산
○ 분류방식	각 부처별 지출한도
○ 지출한도설정	Fiscal Commitment 준수를 위해 긴급예비비, 경제적 여유분을 설정 - 기존지출은 가을 재무위원회(Treasury Board)에 ARLU를 제출하여 승인, - 신규지출은 운영위원회→내각위원회→수상 및 재무부장관의 과정을 통해 결정
○ 재정전망	Economic advisory group과 재무부가 향후 5년치 경제전망→National Accounts 기준의 재정전망→Public Accounts 기준의 재정전망
○ 작성주기	매년 연동 보완
○ 작성시점	2월 말 의회 제출
○ fiscal year	41~ 3.31
○ 작성주체	재무부, 각부처
○ 중기계획-단년도 예산	September-December 사이에 거의 매주 각료회의를 통해 Budget에 대한 합의를 도출, 사전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Estimates로 제출

* ARLU(Annual Reference Level Update): 부처가 승인된 사업을 계획기간(3년)동안 수행하기 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소요시간을 제시하는 예산문서

6. 기타 Q&A

○ 중기계획을 3년으로 하는 이유는?

→ 경제전망은 5년을 수행.(현행 연도 제외)

그러나, Budget상의 중기재정계획은 3년(현행 연도 포함)으로 한정. Budget의 계획은 법정화 된 것은 아니며, 임의로 제출하며, 정부에 따라 변화.

과거에는 Budget을 5년으로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경제여건 등에 따라 변경이 심했음.

이에 따라, 책임성(Accountability) 확보를 위해 3년으로 변경

○ 매년도 예산인 Estimate는 어느정도 상세히 보고 있는지?

→ TBS의 담당자(1,300여명)들이 Line by Line으로 꼼꼼히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있음

○ 경제전망시 외부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부도 경제 전망 능력을 유지하고 있음. 재무부 내부에 30여명의 경제전문가들이 자체적인 경제전망 작업을 수행하고 경제지표를 주시(tracking)

- 그러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식자료는 민간자료를 이용

○ 독립기관의 예산편성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

→ 개별 헌법기관내에 Internal Board of Economy가 TBS와 협의하여 편성 (Push back이 상대적으로 약한 측면)

○ 의무적 예산과 기타 예산의 비율은 어느 수준인지?

→ 70 vs 30 수준

○ 성과관리 시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기관별로 4년마다 시행. TBS 주관으로 하고 있음

○ 성과관리 시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기관별로 4년마다 시행. TBS 주관으로 하고 있음

Ⅲ. 미국 재정제도 조사결과

1. 예산제도 개요

① 예산형식

- 미국의 예산은 **법률 형태** (우리나라는 법률이 아닌 국회의 의결사항)
 - **세출은 개별법과 예산법(Appropriation Bill)에 의해, 세입은 세법 (Tax code)등에 의해 확정**
 - * 법률로 확정된 경우에 한해 정부 지출이 가능하므로 예산법이 확정되지 않으면 1996년과 같은 정부폐쇄(Government Shot-down) 불가피
- 세출은 **의무적 지출과 재량적 지출로 구분하여 편성·관리**
 - **의무적 지출(Mandatory Spending 또는 Direct Spending)은 개별법에 의해 지출의무가 확정 (우리나라의 예산부수법안과 유사)**
 - * 세출법에는 예산권한(budget authority)액이 표시될 뿐 예산지출액(outlay)는 나타나지 않아 양자가 다를 수 있음
 - **재량적 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은 매년 예산법(Appropriation Bill)으로 확정**
 - * 미국의 예산법은 재량적 세출만을 담고 있으므로 예산법은 사실상 재량적 지출에 관한 세출법

② 회계연도

- **회계기간은 1년 단위이며 회계연도 개시는 매년 10월 1일로 회계연도는 January가 속한 연도를 따름**
 - ※ 예시) 2005회계연도는 2004.10월~2005.9월

③ 예산의 종류

- 본예산 외에 **추경예산(Supplemental Budget)**, **잠정예산** 등을 운영
 - 예산확정 후에 특별한 지출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경예산(Supplemental Budget)을 편성
 - 대통령예산안 제출 후 본예산 확정 전에 세입·세출상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수정예산안(Amendment)** 의회 제출 가능
- 회기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잠정예산 (Continuing Resolution)**을 편성하며, 잠정예산에서 설정된 기간동안 운영
 - 잠정예산 기간 내에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잠정예산을 다시 편성
 - * 우리나라의 준예산과는 달리 사전에 지출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본예산과 동일한 절차(의회의 잠정예산법 의결 + 대통령 승인)를 거쳐 확정
 - * 예산 중 일부만이 확정되면, 나머지 미확정부문에 대해 잠정예산을 편성

④ 예산편성 일정

- 예산편성 기간은 행정부 준비기간 10개월, 의회심의 기간 8개월 등 최소 18개월이 소요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10개월 소요)
 - 회기 개시 전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18개월 초과
 - ※ 예산편성 일정은 정치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
- 예산편성은 의회와 행정부간, 의회 내 의견을 조율해 가는 정치과정
 - 행정부(OMB)는 매년 2월초에 대통령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 의회는 대통령예산안을 중심으로 예산을 심의·편성하며, 이 과정에서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

2. 예산편성 방식

① 행정부 편성 과정

- OMB가 기관별 targeting을 통보하면, 각 기관은 예산편성 지침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별 예산 편성
- OMB는 회계연도 개시 18개월 전에 각 부처에 예산편성지침 통보
- 각 부처는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 OMB와 협의, 조율을 거친 후 대통령예산(안)을 확정
 - ※ OMB와 각 부처간 예산 협의시 프로그램별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안에 반영하고 필요시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재정이 수반되는 계획, 법률, 정책 등 수립시 OMB와 사전 협의 필요

② 의회 편성과정

- 대통령예산안을 참고로 상·하원의 예산위원회(Committee on the Budget)에서 분야별 예산총액 배분 후 프로그램별로 예산 배분
- 예산위원회는 재정전체의 세출규모, 세입규모 및 분야별 세출규모를 예산의결(Budget Resolution)형태로 마련한 후 전체회의에서 의결
- 의무적 지출은 수권위원회(해당 위원회)에서 세출한도 내에서 프로그램별 배분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법을 개정

- 재량적 지출은 세출위원회에서 프로그램별 세출예산을 배분
 - ※ 세출위원회는 13개의 소위원회(sub-committee)로 구성되며, 소위원회별 세출한도 내에서 세출예산을 조정
 - ※ 예산법은 13개 세출 분야별로 각기 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여러 개의 Bill을 종합한 omni-bus형태로도 제정

- 의회예산처(CBO)는 독립적인 의회 연구·분석 기관으로 특히 의회예산결의서(congressional budget resolution) 작성 과정에 깊이 참여
 - ※ Baseline Budget and Economic Projections: 10년, Economic Forecasts, Analysis of the President's Budget, Budget Options 등의 자료를 통해 예산위원회 활동을 보조

③ 행정부와 의회의 재정 권한

- 예산편성 및 심의권은 헌법에 의해 의회에 부여
- 행정부는 대통령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나, 이는 의회의 예산편성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의회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음
-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의회의 예산편성은 대통령예산안의 골격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별 조정절차
 - 대통령은 예산법에 대한 일괄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부만을 대상으로 개별거부권(Line-Item Veto)을 행사할 수 없음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일반법과 동일하게 의회에서 2/3이상 찬성으로 법률로 확정할 수 있으나, 정치적 부담으로 정치적 타협 시도
- 예산이 확정되면 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는 분기별 예산배정(Apportion)계획을 수립
 - 각 기관은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
- 예산 집행 결과인 결산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참고용으로 의회에 제출
 - ※ 미국은 예산회계는 현금주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결산은 발생주의 방식을 채택 (우리나라는 예·결산 모두 현금주의방식을 채택)

<미국의 예산과정 흐름도: 2년의 FY가 Overlapping>

일정	주요내용	주요서류 및 비고
① 행정부의 대통령예산안 편성단계 : FY-18개월 ~ FY-8개월		
FY-18개월: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MB는 각 부처에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Spring planning guidance 시달 · OMB처장은 각 부처 장에게 각 부처의 예산 요구에 필요한 policy guidance letter 전달 · 특정 언급 없는 경우, 전년도 예산에 포함된 outyear estimates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항은 공개, 특별사항은 비공개로 전달 * 구체적인 지출한도 제시여부는 case by case * 현재 작업하는 대통령 예산서는 다음해 2월 제출
봄 ~ 여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MB와 각 부처는 예산 이슈에 대해 논의 · 다음연도 예산에 대한 주요 이슈 확인 · Fall Review에 대비하여 대안의 발굴 및 분석 · 미래에 결정이 필요한 이슈의 분석 계획 수립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rcular No. A-11 각부처에 송부 (우리나라 예산안작성지침과 유사) 	Circular No. A-11
7월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MB는 당해 2월에 제출한 대통령 예산서*¹의 전망치에 대한 수정인 Mid-Session Review를 의회에 제출 	* 전년도 봄부터 준비한 대통령예산서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집행기관이 OMB에 예산요구서 제출 (OMB가 특정 시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예산연도 시작(current year budget)* ¹ : 10월 1일		
10월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MB가 Fall Review 수행 · OMB staff은 부처 예산요구가 대통령의 우선순위, 프로그램 성과, 예산 제약에 부합하는지 검토 · 각 부처는 OMB처장과 정책담당관에게 이슈와 대안 제시 	
11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MB가 대통령과 각료(senior advisors)에게 예산정책을 보고하고, 모든 부처의 예산과 전반적인 예산정책 검토 후 대통령에게 예산안 보고 ○ OMB는 각 부처에게도 예산정책을 동시에 통보(Passback) 	
11월 말 ~1월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기관, 사법기관을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은 확정된 예산안을 MAX(예산회계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출력 자료를 OMB에 제출 	* Passback 직후 시작해서 OMB가 database lock 시점까지

일정	주요내용	주요서류 및 비고
12월	○ 부처는 OMB와 대통령에게 각 정책에 대한 이의신청 및 설득, 대개 OMB와 각 부처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대통령이 최종 결정	
FY: 1월	○ 부처는 의회의 담당 소위원회에 예산 요구를 설명하기 위해 의회예산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OMB가 검토	
2월 첫 월요일	○ 대통령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President's Budget
② 의회의 예산안편성 및 심의단계 : FY-8개월 ~ FY-0개월		
1월	○ CBO가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s)에 Economic and Budget outlook 제출	Economic and Budget outlook
2월	○ CBO가 자체적인 경제·기술 예측하에 대통령 예산안을 재추계(reestimates)	
대통령예산서 제출후 6주 이내	○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예산에 대해 하원 및 상원 예산위원회에 “views and estimates”를 제출	views and estimates
4월 15일	○ 상·하원 예산위원회가 협의한 연방 예산의 총규모와 기능별 분류에 따른 규모를 내용으로 하는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을 상·하원 동시 의결	Budget Resolution
6월 30일	○ 하원 본회의 세출법안 (Appropriation Bill) 의결	
7월15일	○ OMB가 2월에 제출한 대통령 예산안에 대해 상황 변화를 반영한 Mid-Session Review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논의 중인 예산안에 대한 행정부 입장 표명	Mid-Session Review
9월30일 까지	○ 상원 세출법안 의결, 상·하원 세출위원회간 조정(floor action)과 상하원 본회의(full House and Senate) 통과후 세출법안 대통령 보고 또는 continuing resolution을 제시 (stop-gap appropriation law)	Appropriation bill * 예산 미확정시 잠정예산 편성
예산연도 시작(current year budget) : 10월 1일		
③ 예산집행 단계 : FY ~Fund Expire 후 5년까지 (Fiscal Year는 1년 단위)		
9월10일	○ OMB가 연간 승인 범위내에서 예산을 배정 · 각 기관은 배정요구서를 OMB에 제출(8월 21일 또는 개별 법령 승인이후 10일 이내)	* 지출승인법안 승인 후 30일 이내도 필요
FY 전반	○ 개별기관은 의무사항을 수행하고 예산 수반되는 활동에 예산을 지출하고 보고사항 기록	
FY+1년:9 월 30일	○ 예산 연도 종료	
Fund Expire+ 5년의 9월 30일	○ 만료된 단계, 개별기관은 이용 가능한 기간 동안의 실제적 의무사항을 고려하여 의무적인 균형에 조정하고 나머지 지출을 하고 보고사항 기록	

3. 중기재정계획 (Multi-Year Proj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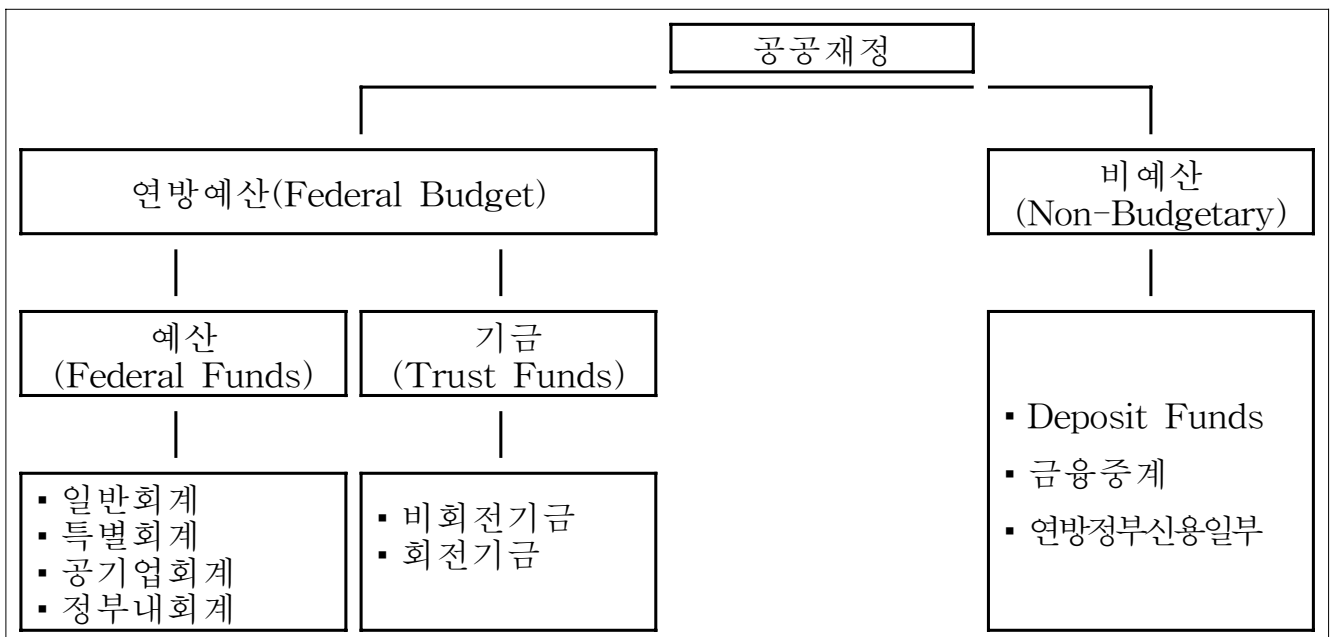
1] 중기재정계획의 성격

- 대통령 예산서의 일부로 국회의 예산 결의안 및 세출 법안 작성에 사용되는 중기재정전망
 - 2월: 대통령 예산서와 함께 제출, Analytical Perspectives
 - 7월: Mid-Session Review

2] 주요 내용

- 계획기간: 5년(당해년도 + 향후 4년)
 - * Analytic Perspective 에는 과거 실적 2년+ overlapping되는 예산년도 2년+향후 4년 제시
- 포괄범위: 연방예산만 포함

<미국의 중기재정계획 범위>



* 연방예산(2005기준) 중 On-Budget: 72%
 Off-Budget: 28% (social security funds, postal service fund)

③ 중기재정계획 관련 예산절차

- 2월 첫째 월요일: 대통령 예산안의 부속서류로서 OMB가 중기재정전망(**Analytical Perspectives**)을 의회에 제출
- 4월 15일까지: 양원은 단일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 작성 및 의결
- 6월 말까지: 하원은 세출법안 심의 및 의결
- 7월 15일: OMB는 중기재정전망 수정안(**Mid-Session Review**) 의회 제출
- 9월 말: 상원에 의한 세출법안 의결 및 조정으로 예산최종 확정

④ Analytical Perspectives의 주요 내용

- 당해연도 +향후 4년간의 중기재정전망(**Economic Assumptions**)
 - GDP(금액 및 증가율), CPI, 실업률, 이자율 등에 대한 5년간 **Projection**
 - OMB 전망시 대통령 제안 정책이 모두 채택된다는 가정(**policy basis**)과 변화가 없다는 가정(**current-service basis**)로 나누어 전망
 - * 50여개 민간 연구소 평균 전망치와 CBO 자체 예측치에 대해 비교
 - * 예산전망의 변동 요인 (정책, 경제전망 및 기술적 요인 등)이 야기한 전년도 대비 예산전망 변동규모 제시
- 연방정부 수입(**Receipts, User fees & Other Collections** 등)
 - 조세수입(개인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관세 등),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기타 수입 등에 대해 당해 년도 포함한 향후 5년의 회계연도 전망치 제시
 - 조세감면, **tax incentives** 등 조세지출예산 규모

- 연방정부 지출(Spendings)
 - 투자지출, 자본예산, R&D, 사회복지, 지방정부지원금 등을 19개 분야로 나누어 세부분야별로 법정지출(Mandatory Spending)과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로 구분하여 전망
- 연방정부 차입금 및 채무(Federal Borrowing & Debt)
 - 차입금, 국가채무, 재정적자 규모 등

⑤ Mid-Session Review 주요 내용

- 제출근거: 1921년 예산회계법, 현재는 US Code, Section 1106 of Title 31
- 다음 회계연도의 당초 예산안 대비 세출, 세입, 예산권한, Analytical Perspectives와 대비한 재정수지 추계치의 변동사항 위주

<미국의 중기재정계획 성격>

구분	미국
○ 정치체제	대통령제
○ 중기재정계획명칭	Multi-Year Projection ①Analytical Perspectives, ②Mid-Session Review
○ 제출형태	예산서 일부
○ 법적사항 여부	X
○ 의회제출여부	O (예산서 일부)
○ 의회심의·의결	X
○ 구속력	예산과정 참고자료
○ 공개여부	O
○ 계획기간	5년(당해+향후4년)
○ 중기계획범위	연방정부예산
○ 분류방식	전체, 부처별·기능별 지출
○ 지출한도설정	지출전망수준으로 OMB가 설정
○ 재정전망	OMB, 민간, CBO 등의 전망치 비교
○ 작성주기	연간 2회 수정보완
○ 작성시점	①Analytical Perspectives(2월) ②Mid-Session Review(7월)
○ fiscal year	10.1~9.30
○ 작성주체	OMB
○ 중기계획-단년도 예산	의회가 중기전망을 참고로 단·다년도 예산 편성

4. 기타 방문기관별 주요내용

① CBO(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Legislative Branch

□ 조직 및 인력

- 1974년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에 의해 설립되었고 현재는 230명 정식 직원이 근무
- CBO Director는 the Speaker와 President pro tempore가 함께 선출
- CBO 직원의 70% 이상이 경제학, 정책학 및 관련분야 석사이상의 학위 소위

□ 주요역할

- CBO의 책무는 크게 i) 의회가 예산계획 수립시 보조, ii) 의회가 예산계획 내에서 예산편성 하도록 보조, iii) federal mandates의 영향을 조사, iv) 예산과 경제정책 관련 이슈 검토
- 중립적인 의회 연구·분석 기관으로 특히 의회예산결의서 (congressional budget resolution) 작성 과정에 깊이 참여
- 예산위원회를 돕기 위해 ▪ Baseline Budget and Economic Projections: 10년, ▪ Economic Forecasts, ▪ Analysis of the President's Budget, ▪ Budget Options
- 예산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의 활동을 돕기 위해 ▪ Cost Estimates for Bills , ▪ Scorekeeping, ▪ Monthly Budget Review, ▪ Unauthorized Appropriations and Expiring Authorizations, ▪ Budgetary and Economic Policy Issues
-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에 따라 연방 법률이 state, local, tribal government와 private sector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재정과 관련한 주요사업

① **10 year-Baseline Projection**

- 장기재정전망 추계를 통한 의회 예산과정의 **starting point**
 - 현재의 법과 제도가 동일하다고 가정
 - 의무적 지출: **enrollment**, 적격성, 평균비용, 경제지표(**GDP, inflation** 등)
 - 재량적 지출: 현재의 승인법안을 기준으로 하여 전망
 - 세입: 경제상황에 따라 민감도 분석
 - 순이자율: 국가부채 및 이자율

② **Cost estimates**

- CBO는 개별 위원회 별로 승인하는 개별 법령에 대한 **cost estimates** 시행(대개 연간500-700건)
 - 승인받은 또는 의무 지출에 대한 **Score-Keeping**을 담당
 - **Baseline Projection**에 따라 변동
 - 현행 예산연도와 향후 5년에서 연방정부 예산의 효과 분석
 - 기본적인 추정수치와 개별기관, 이자율, 기타 지표 정보를 포함
 - 중앙정부예산의 **state/local & private-sector effect**도 포함

② GAO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Legislative Branch

□ 조직 및 인력

- 1921년 The Budget and Accounting Act에 의해 설립되었고 현재는 3260명 직원이 근무하며 이들로부터 510억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 발생('06년 기준)
- Washington D.C.에 있는 본부와 11개의 Branch로 구성
- GAO는 “investigative arm of Congress” 또는 Congressional watchdog”으로 불림
- GAO의 모든 보고서가 담고 있는 core value는 GAO's Mission은 accountability(the nature of GAO's work), integrity(the high standards that characterize GAO) and reliability(the goal of GAO's work)

□ 주요역할

- 재정성과 감사, 프로그램 평가, 조사, 법적 검토 및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oversight, insight, foresight 기능을 수행
- GAO 업무의 대부분(약 95% 정도)은 의회 요구 사항으로 의회의 일반회계 예산 할당, 법안 심사, 정부 운영의 효율성 감시 등을 보조
- GAO는 또한 각 부처가 국민에 대한 책임성 증가와 성과중심이 되도록 management reform 수행
- GAO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조사도 수행

□ 재정과 관련한 주요사업

① Alternative Fiscal Policy Simulations

- 두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하여 정치, 사회적 압력에 따른 재정적자 가능성에 대한 Alarm 기능을 통해 정책 변화 유도
 - i) Baseline Extended: CBO의 10-year baseline projection을 40년 시계로 연장
 - ii) Alternative Simulation : 2007년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재량적 지출 증가와 2006년 세금감면액을 포함해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세수를 제외하고 분석
- ☞ 분석결과 2040년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i)의 경우 약 10% , ii)의 경우 약 20%로 막대한 재정적자 상황 예상

② High-Risk Program

- High-Risk Program은 1990년 시작되어 연방 정부내에 장·단기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확인하고 해설
 - 연 2회 update되며, risk 분야는 프로그램, 관리기능상 장애 또는 일반적인 기관의 문제도 포함
 - High Risk Areas 결정은 GAO-01-159SP라는 공식 기준이 존재-양적 및 질적 요소를 고려
 - High-Risk program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기관 CEO's 공약, action plan 수립, 의미있는 진전이 계속되거나 감사 및 타당성 검증절차를 거쳐 이루어짐

- High-Risk program 항목은 1990년 14개에서 '07년 까지 33개 추가, 20개 삭제되어 '07년에는 27개 list 존재

<'07년 추가 list>

- * Transforming Federal Oversight of Food Safety
- * Ensuring the Effective Protection of Technologies Critical to U.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 * Financing the Nation's Transportation System

③ Performance & Accountability Report

- 전략계획 수립시 가이드라인에는 GPRA와 Accompanying Committee Report, OMB Circular No. A-11, GAO's Guidance 존재
- GAO는 개별 부처나 사업의 성과 평가시 check-list를 만들어 점수를 주고 그것의 개선정도를 확인

5. 기타 Q&A

1 OMB

<예산 편성 관련>

- 각 부처가 OMB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논한 내용과 달리 국회에서 다른 행동을 할 경우 어떻게 대처 하는지?
(행정부내에서 하지 않기로 한 정책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려 하는 등)
- ☞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국회 CBO 등과 계속 대화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은 적음
- ☞ 그러나, 그런 사례가 일어나면, 이에 대해 우선 제재 노력을 함
이는, 사안의 중요성, 상대 기관, 상대방의 power 등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음
과거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우리쪽에서 그 부처의 장이 “이제 쉬어야 될 때”라고 상부에 건의해서 그 부처의 장을 사퇴(resign) 시킨 사례도 있음
- 가장 힘이 센 부처는 어디인가?
 - ☞ 힘이 센 부처를 원하는 예산이 반영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국방부, 복지부(Social Welfare), 보훈처(veteran) 같은 기관임
 - ☞ 국방은 대통령이 지지해서 방어하기 어렵고,
복지는 예산요구에 대해 성격상 반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개별 부처의 중기계획은 협의하는지?

☞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재정이 수반되는 계획, 법률, 정책 등 수립시 OMB와 사전 협의 필요

☞ OMB와 협의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재원지원 없음

○ OMB는 부처에 지출한도(targeting)를 어떻게 주는가?

☞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다름. 어떤 때는 전년도를 넘지 않는 수준(not exceed last year) 등으로 대략적으로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구체적인(specific) 숫자를 주기도 함

☞ 이러한, 숫자는 의회 등에서 이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음

○ OMB는 부처에 편성지침을 주는가?

☞ 공개된 지침을 주는 경우(circular A-11이나 다른 문서)도 있고, 비공개인 특정지침을 주는 경우도 있다.

○ 의무적 지출과 재량적 지출에서의 Funding Level ?

☞ 의무적 지출의 경우 법정에 의해 구체화, 재량적 지출의 경우 예산액으로 결정

○ 예산의 편성을 위한 심의회(interal committee)가 있는가?

☞ 없음. 각 담당별로 상부에 보고하여 결정하는 방식임

☞ 사안마다 필요한 전문가를 모셔서 의견을 듣기는 함

○ OMB가 각 부처 예산사업을 보는 정도는?

☞ 예산 전문가(experts)들이 각 사업을 line-by-line으로 보고 있다.

○ OMB의 업무량은 어느 정도인가?

☞ 예산시즌 등에는 매우 바쁨(24 hours a day and 7 days a week)이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예산업무는 비슷하다.

○ OMB가 좀 더운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지난 4년간 모범을 보이기 위해 OMB 예산이 동결되었다. 그리고 나서 OMB의 장이 떠나버려서 남은 사람들이 매우 mad한 상태임

<재정전망 관련>

- 향후 새로운 재정이슈로 예상되는 것과 이에 대한 대책은?
 - ☞ 예상되는 이슈는 1) 새로운 정부의 출범 2) 사회복지 3) baby boom 세대의 은퇴에 따른 건강보험 문제가 대두
 - ☞ 향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태, 현재 법제화를 위한 노력은 없고, 경고만 수행

- 미국은 국가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나?
 - ☞ 연방정부는 법적인 국가부채 한도를 지켜야 한다. 1917년 1차 세계대전후 정부의 차입한도를 정하는 법을 제정, 현재 한도는 7조 3840억 달러(2003.5월 제정)
 - ☞ 국가부채 한도(debt limit)는 의회의 승인으로 성립되고, 의무 지출 증가 등이 발생하면 국채발행으로 충당
 - ☞ 부채발행 규모가 한도에 도달하면 재무부가 한도 확대를 국회에 요구하여 승인받는 형식

- 클린턴 정부와 부시 정부에서 재정운용의 성과는 어떠하다고 보는가?
 - ☞ 클린턴 정부에선 1997년 BEA의 확대 내용을 담은 균형예산법(The Balanced Budget Act)를 제정하여 균형재정이 중시되었는데 2002년 유효기간 만료로 교통,환경보전 분야 이외의 지출한도 설정 근거가 사라짐

- ☞ 이후 재량적 지출에 대한 2004-2009 지출한도를 설정하려는 Spending control act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노력 하였으나 통과되진 못함
- ☞ 클린턴 시대의 흑자를 두고, 일부에서는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 등 정책의 결과라고 이야기 하고, 일부에서는 균형예산법을 지킨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음.
- ☞ 현재 부시정부는 대테러 전쟁, 보안강화 등 막대한 재정지출 소요와 '02년 폐지된 균형재정법 이후 별도 균형재정 법안이 없어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 재정준칙이 있는가?
- ☞ 구속력있는 재정준칙은 없지만 2012까지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Loose Goal 있음

<의회관계 관련>

○ CBO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매일 연락하며 계속 대화를 하고, 정보를 교환(share the information daily basis)

☞ 우린 행정부와 국회에서 근무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serve the same function), 서로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 협조

○ CBO와 재정소요 예측 차이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하는지?

☞ try to reduce the difference. 따라서, number를 상호 close하게 근접시켜 meaningful하게 만들려 노력

☞ 최근, OMB와 CBO간 예측치가 다를 경우 CBO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추세

2] CBO

- OMB(1921년)가 생기고 나서 CBO(1974년)가 생기기까지 50여년이 걸렸다. 그 이유는 뭔가?
 - ☞ 1921년 Budget and Accounting Act에는 의회내에서 예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규정하지 않았다. 그 때는 예산이 복잡하지 않았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닉슨 시절에 긴급·막대한 전쟁 재원 조달을 위해 의회 위원회 승인을 거치지 않는 Presidential Impoundments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
 - ☞ 의회 내에서 예산관리 능력의 증진되면서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s)와 예산 전반을 보조하기 위한 CBO 조직이 생김
- OMB, GAO, CBO 모두 재정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민주주의 원칙인 Check and Balance를 위한 것이다. 각각 독립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 CBO-OMB는 어떤 관계인가?
 - ☞ 우리는 Excellent Relationship을 가지고 Share Information 하고 있다. cost analysis 측면에서 communication을 하고 고위급에서도 긴밀히 협의한다.
 - ☞ 친목도모를 위해 정기적으로 Softball game을 하는데 우리가 매번 이기는 편이다.

○ 행정부와 의회의 역할 비중은 어떻게 되나?

☞ 행정부와 의회의 역학관계에 따라 변한다.

☞ 행정부가 공화당일 때, 의회도 공화당이면 행정부의 권한이 세지고, 행정부는 공화당인데 의회는 민주당이면 의회가 행정부를 Push back한다.

○ CBO의 분석 자료는 얼마나 받아들여지는가?

☞ 국회에서 의원들이 재정수반 법안 제출시 CBO에 분석을 의뢰하는데 95% 이상이 우리자료를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다.

○ CBO는 재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 CBO는 정책의 Cost-Estimates에 중점을 둔다.

☞ 또 각 대안의 장·단점까지 분석하지만 정책제안은 안함 (not policy recommendation) CBO는 정파적이 되지 않도록 (non-partisan) 노력하고 있고, 이런 중립성이 우리 자료가 신뢰를 받는 이유이다.

○ On Budget/Off Budget의 차이는 무엇인가?

☞ Off Budget은 Pay-as-go system이 가능한 영역의 예산을 지칭

3 GAO

- GAO가 Alternative Fiscal Policy Simulation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 우리의 분석은 Alarm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럴 위험에 대처하여 미리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자는 의미이다.
 - ☞ 우리는 simple한 모형을 가지고 추정을 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CBO의 복잡한 추정모델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 High-Risk Series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관리수단은 무엇인가?
 - ☞ GAO 자료가 발표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각 부처의 CEO들의 관심이 많고 목록에서 빠지기 위해 노력한다
 - ☞ 다시 말하면 Power of Shame!이다.
- GAO가 부처 사업에 대해 Score-Keeping 하는 수단은 무엇인가?
 - ☞ GPRA에 따라 GAO는 각 부처 사업을 Check-list 형식으로 평가하여 그 점수가 향상되는 정도를 follow-up 한다.

IV. 정책 합의

1. 캐나다

① 새로운 재정소요 정책과 기존 정책의 구분 관리

- 새로운 정책(new measure)은 “Budget”에 포함하여 정책방향 논의에 중점
- “Budget”은 정부의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보고서로 간주
- 기존 정책은 “Estimates”로 TBS와 관계부처의 재정소요 판단에만 중점

② 중기계획의 신뢰성 확보 노력

- 정부내에도 자체적인 경제전망 기능이 있으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기관의 경제전망을 활용
- 경제전망(5년)은 길게 하나, 중기계획(3년)은 책임성(Accountability) 확보를 위해 짧게 설정

③ 중기계획과 Top-down이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중기계획은 재정수지 예측을 위해 시행
- Top-down 제도는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부처별 한도를 정하는 의미에서 도입
- 부처 자율 편성과는 별개 사안 (TBS에서 세부적으로 검토)

④ 재정적자 축소 노력 강화

-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기능을 강화(민간 협조)
- GDP 증가율보다 경상성장율을 낮게 설정함으로써 부채 증가율 축소 계획

⑤ 재무부와 TBS의 역할 구분

- 단년도 예산편성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TBS
(기획예산처와 성격이 유사)
- 예산편성 과정의 세부적인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TBS 방문 필요

2. 미국

① 장기 재정전망 기능을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

- “Check and Balance”를 통해 예측의 정확성 제고 노력

② 주요 재정관련 사항은 정부내 단일한 입장 견지 노력

- 행정부내 주요 재정 관련 사항은 OMB와 반드시 협의
- 정부내 협의된 사항에 대해 국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이에 대한 제재 노력

③ “Cost-estimates” 정확성 제고 노력 강화

- 정책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재정소요가 주요한 쟁점
- OMB, CBO, 국회의원간 Cost-estimates를 두고 상호 논란 가능성

→ 향후, 정밀한 재정소요 추계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소요 추계 방식의 공식화·체계화 필요

④ “OMB”와 “CBO”간 긴밀한 정보 교환 노력

- 주요 정책의 재정소요 추계 방식 등에 있어 상호 긴밀히 정보 교환

⑤ CBO는 정책에 대한 **recommendation**은 수행하지 않음

- 비 정파적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cost-estimates 및 장·단점 분석 역할에 국한

I. 미국

1]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I. 중기재정계획의 법적 성격 및 구체적 운영 방식

1. 별도의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하는가?

※ 기존 정보

- ① 영국 : Spending Review (3개년 계획 / 2년에 한번 작성)
- ② 스웨덴 : Spring Fiscal Policy Bill (3개년 계획 / 매년 작성)
- ③ 프랑스 : 파악 필요
- ④ 미국 : 별도 작성 × (예산서 일부로 Analytical Perspectives 작성)
- ⑤ 캐나다 : 별도 작성 × (Budget Plan에서 3개년 재정수지 전망)
- ⑥ 호주 : 별도 작성 ×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
- ⑦ 뉴질랜드 : 파악 필요

○ 중기계획 기간은 몇 년이며, 당해연도를 포함하는가?

※ 기존 정보

- ① 미국 : 중기전망(Analytical Perspectives) 5년 (당해 + 향후 4년)
- ② 캐나다 : 재정수지 전망 (Budget Plan) 3년 (당해 + 향후 2년)
- ③ 호주 : 다년도 예산 5년 (전년 + 당해 + 향후 3년)

○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빈도는 ? (매년, 2년, 5년 등)

2. 중기계획계획의 의회 제출이 법적 의무사항인가?

○ 의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가?

※ 스웨덴 : 중기계획에서 27개 분야별 지출한도 제시 → 의회 승인

○ 의회 제출시기는 언제인가? 예산서와 함께 제출하는가?

○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는가?

* 단순 공청회 vs. 의회 사전보고 vs. 의회직원이 수립과정에 참여

3. 중기계획에서 제시한 재정총량을 예산편성시 준수하는가?

○ 여건변화에 따라 매년 중기계획을 연동 보완하는가?

4.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국무위원 합의는 어떤 방식을 거치는가?

※ 스웨덴 : 2박 3일간 배석자 없이 국무위원 회의 개최

5.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경제·재정 전망 방법은 ?

* 재무부, 예산당국, 의회, 민간연구소 참여 등

※ 기존 정보

① 미국 : OMB, Treasury, CEA간 Trioca 구성

② 호주 : DOFA, Treasury, 중앙은행, 총리실간 협의체 구성

6. 중기재정계획의 작성 범위는 ?

○ 중앙정부에 한정 vs. 지방정부를 포함

7. 재정이 수반되는 각부처의 중장기계획의 협의방식은?

○ 협의지침 등이 존재하는가? 수시로 필요시 협의하는가?

○ 중기재정계획과 배치되는 각부처의 중장기계획 수립시 재정당국은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8. 중기재정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는가?

II. 재정준칙 설정방식

1. 재정준칙이 존재하는가? (예 : 영국의 Golden Rule)

○ 재정준칙의 형태 및 설정 방식은 무엇인가?

* 예 : 지출상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 재정준칙이 실제로 작동되는가? 그 효과는 무엇인가?

2. 연도별 지출총액을 설정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 부처의 예산요구를 합산하여 Bottom up으로 결정 vs.

재정수지 준칙을 목표로 결정 vs. 국가채무 준칙을 목표로 설정

3. 회계기간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가?

III. Top-down 제도 운영

1. 각부처에 주어지는 재량권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 지출한도를 준수하면 세부사업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가?

○ 지출한도 미준수시 재정당국은 어떤 수단을 강구하는가?

* 지출한도 준수 재요구 vs. 직접 세부사업 편성 vs. 패널티 부여

2. 지출한도 제시 후 국회제출 전까지 지출한도 변경은 없는가?

3. 다수 부처에 걸친 정책 예산편성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가? 다수 부처 의견을 조율하는 장치가 있는가?

4. 지출한도 설정시 특별히 통제하는 예산이 있는가?

* 예시 : 수당,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

5. 국회, 헌법재판소 등 독립기관에 대해서도 지출한도를 부여하는가?

○ 독립기관의 과도한 예산요구(시설 과다증축, 인력 증원 등)시 협의 방안은?

IV.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한 세출 구조조정 및 세입 확보방안

1.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연금개혁 등 제도개선 추진 현황

2.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가?

○ 세출 구조조정 원칙 및 방법은?

3. 조세 외에 추가적 세입 확보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가?

* 한국의 경우 국유재산 활성화, 공기업 매각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

V. 기타

1. OMB는 장기경제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망기간은? 얼마나 자주 장기전망을 실시하는가? 또 장기경제전망을 하는 다른 기관은?
2. 예산과정에서 CBO와 OMB가 각각 독립적으로 거시경제 지표를 전망하는 취지와 CBO의 거시경제 지표 전망 방식은 어떠한가?
 - OMB가 추계하는 거시경제 지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추계하는가? 또한 담당인력의 수는 어느정도 인가?
 - 대통령 예산서에 포함되는 최종 거시지표의 결정방식은 ?
4. 보건의료비 증가, 테러와의 전쟁 등 새로운 자원소요에 대한 자원조달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 원칙과 방법은?
 - 조세 외에 추가적인 세입 확보 방법으로 논의 중인 대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 한국의 경우 국유재산 활성화, 공기업 매각 등 다양한 자원확보 방안을 마련 중
5. 미국 예산제도를 통일된 형태(기본 예산법)로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2 Congressional Budget Office

I. 중기재정계획의 법적 성격 및 구체적 운영 방식

1. 별도의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하는가?

※ 기존 정보

- ① 영국 : Spending Review (3개년 계획 / 2년에 한번 작성)
- ② 스웨덴 : Spring Fiscal Policy Bill (3개년 계획 / 매년 작성)
- ③ 프랑스 : 파악 필요
- ④ 미국 : 별도 작성 × (예산서 일부로 Analytical Perspectives 작성)
- ⑤ 캐나다 : 별도 작성 × (Budget Plan에서 3개년 재정수지 전망)
- ⑥ 호주 : 별도 작성 ×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
- ⑦ 뉴질랜드 : 파악 필요

○ 중기계획 기간은 몇 년이며, 당해연도를 포함하는가?

※ 기존 정보

- ① 미국 : 중기전망(Analytical Perspectives) 5년 (당해 + 향후 4년)
- ② 캐나다 : 재정수지 전망 (Budget Plan) 3년 (당해 + 향후 2년)
- ③ 호주 : 다년도 예산 5년 (전년 + 당해 + 향후 3년)

○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빈도는 ? (매년, 2년, 5년 등)

2. 중기계획계획의 의회 제출이 법적 의무사항인가?

○ 의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가?

※ 스웨덴 : 중기계획에서 27개 분야별 지출한도 제시 → 의회 승인

- 의회 제출시기는 언제인가? 예산서와 함께 제출하는가?
-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는가?

* 단순 공청회 vs. 의회 사전보고 vs. 의회직원이 수립과정에 참여

3. 중기계획에서 제시한 재정총량을 예산편성시 준수하는가?

- 여건변화에 따라 매년 중기계획을 연동 보완하는가?

4.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경제·재정 전망 방법은 ?

* 재무부, 예산당국, 의회, 민간연구소 참여 등

※ 기존 정보

- ① 미국 : OMB, Treasury, CEA간 Trioca 구성
- ② 호주 : DOFA, Treasury, 중앙은행, 총리실간 협의체 구성

II. 예산·결산 과정에서 CBO의 역할

1. 예산 과정에서 CBO의 역할을 예산 일정과 연결시켜 설명

2. CBO가 의회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 의회 위원회가 가지는 예산 배분 역할과 CBO 및 OMB의 예산 계획이 위원회 의사 결정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3. 예산 수반 법률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CBO의 역할은?

4. 미국 예산제도를 통일된 형태(기본 예산법)로 규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가?
5.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준칙 (예: 영국의 Golden Rule)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에 대한 논의가 CBO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6. CBO는 재정건전성(예)국가채무, 재정적자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는가? 분석한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III. 거시경제 전망 및 경제 지표

1. CBO는 장기경제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망기간은? 수행주기? 또 장기경제전망을 하는 다른 기관이 있는가?
2. 예산과정에서 CBO와 OMB가 각각 독립적으로 거시경제 지표를 전망하는 취지와 CBO의 거시경제 지표 전망 방식은?
 - CBO가 추계하는 거시경제 지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추계방식은? 또한 담당인력의 수는 어느 정도 인가?

IV.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복지지출 증가에 대비한 CBO의 역할

1. 새로운 재정이슈에 대비해서 CBO의 분석보고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러한 분석보고서에서 재정수요추계 뿐만 아니라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가?
2. 의회 위원회는 CBO의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3]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미국의 예·결산 순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GAO가 관련되는 시점과 역할은 무엇인가?
- GAO의 역할 영역은 어떻게 구분되며 영역별 인력배치는 어떠한가?
- GAO가 수립하는 Strategic Planning,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의 내용은 무엇인가?
 - GAO의 SPPA와 OMB의 성과관련 지침과의 관계는?
 - SPPA는 5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수립과정은 어떠한가?
 - SPPA가 구속력을 갖는가? 갖는다면 어느 정도인가?
- 향후 GAO의 개혁 및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4 UN 대표부 Questionnaire

1. UN의 개혁방향과 현 진행상황

- UN 개혁방향에 대한 개략적 설명 부탁
- 코피아난 전 총장시절부터 UN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반기문 총장 취임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반총장님께서 추진하는 개혁과정에서 우리 나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거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2. UN 분담금, PKO 분담금 등 분담금 결정구조 및 향후 전망

- UN 분담금, PKO 분담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 국제기구분담금 체납액 전액 해소를 위한 예산이 금년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전액 집행되었는지?
- 미국이나 일본은 전략적으로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나라만 분담금 체납액을 조기에 해소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 PKO 분담금은 PKO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칫 금년에 해소된 체납금이 쌓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어떤 대책이 있는지?
- 분담금은 제5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나라들은 그룹별로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

리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분담을 결정과정에 참여해야한다고 보는데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3. 혁신적 개발재원에 대한 문제

- ODA를 일반재정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프랑스를 중심으로 항공권연대기여금 등 혁신적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지출 증가, 통일비용 등으로 향후 재정운용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요인들이 있음. 우리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ODA 규모도 늘려야 한다는데 재정당국의 고민이 있음. 선진국의 사례를 포함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4. UN 기구의 재정계획과 현황

- UN 재정구조(세입과 세출)와 세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은?
- UN 분담금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 수단은?
- UN의 재정 지출의 투명성과 성과를 판단하는 방법은 ?
- UN의 재정도 단년도를 넘어서 중기적 전망이나 계획을 세우는지?

II. 캐나다

I. 중기재정계획의 법적 성격 및 구체적인 운영 방식

1. 별도의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하는가?

※ 기존 정보

- ① 영국 : Spending Review (3개년 계획 / 2년에 한번 작성)
- ② 스웨덴 : Spring Fiscal Policy Bill (3개년 계획 / 매년 작성)
- ③ 프랑스 : 파악 필요
- ④ 미국 : 별도 작성 × (예산서 일부로 Analytical Perspectives 작성)
- ⑤ 캐나다 : 별도 작성 × (Budget Plan에서 3개년 재정수지 전망)
- ⑥ 호주 : 별도 작성 ×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
- ⑦ 뉴질랜드 : 파악 필요

○ 중기계획 기간은 몇 년이며, 당해연도를 포함하는가?

※ 기존 정보

- ① 미국 : 중기전망(Analytical Perspectives) 5년 (당해 + 향후 4년)
- ② 캐나다 : 재정수지 전망 (Budget Plan) 3년 (당해 + 향후 2년)
- ③ 호주 : 다년도 예산 5년 (전년 + 당해 + 향후 3년)

○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빈도는 ? (매년, 2년, 5년 등)

2. 중기계획계획의 의회 제출이 법적 의무사항인가?

○ 의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가?

※ 스웨덴 : 중기계획에서 27개 분야별 지출한도 제시 → 의회 승인

○ 의회 제출시기는 언제인가? 예산서와 함께 제출하는가?

-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는가?
* 단순 공청회 vs. 의회 사전보고 vs. 의회직원이 수립과정에 참여

3. 중기계획에서 제시한 재정총량을 예산편성시 준수하는가?

- 여건변화에 따라 매년 중기계획을 연동 보완하는가?

4.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국무위원 합의는 어떤 방식을 거치는가?

※ 스웨덴 : 2박 3일간 배석자 없이 국무위원 회의 개최

5.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경제·재정 전망 방법은 ?

- * 재무부, 예산당국, 의회, 민간연구소 참여 등

※ 기존 정보

- ① 미국 : OMB, Treasury, CEA간 Trioca 구성
- ② 호주 : DOFA, Treasury, 중앙은행, 총리실간 협의체 구성

6. 중기재정계획의 작성 범위는 ?

- 중앙정부에 한정 vs. 지방정부를 포함

7. 재정이 수반되는 각부처의 중장기계획의 협의방식은?

- 협의지침 등이 존재하는가? 수시로 필요시 협의하는가?
- 중기재정계획과 배치되는 각부처의 중장기계획 수립시 재정당국은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8. 중기재정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는가?

9. 캐나다는 별도의 중기재정계획이 없고 Budget Plan에서 3개년 재정수지를 전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II. 재정준칙 설정방식

1. 재정준칙이 존재하는가? (예 : 영국의 Golden Rule)

○ 재정준칙의 형태 및 설정 방식은 무엇인가?

* 예 : 지출상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 재정준칙이 실제로 작동되는가? 그 효과는 무엇인가?

2. 연도별 지출총액을 설정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 부처의 예산요구를 합산하여 Bottom up으로 결정 vs.

재정수지 준칙을 목표로 결정 vs. 국가채무 준칙을 목표로 설정

3. 회계기간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가?

III. Top-down 제도 운영

1. 각부처에 주어지는 재량권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 지출한도를 준수하면 세부사업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가?

○ 지출한도 미준수시 재정당국은 어떤 수단을 강구하는가?

* 지출한도 준수 재요구 vs. 직접 세부사업 편성 vs. 패널티 부여

2. 지출한도 제시 후 국회제출 전까지 지출한도 변경은 없는가?

3. 다수 부처에 걸친 정책 예산편성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가? 다수 부처 의견을 조율하는 장치가 있는가?

4. 지출한도 설정시 특별히 통제하는 예산이 있는가?

* 예시 : 수당,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

5. 국회, 헌법재판소 등 독립기관에 대해서도 지출한도를 부여하는가?

○ 독립기관의 과도한 예산요구(시설 과다증축, 인력 증원 등)시 협의 방안은?

IV.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한 세출 구조조정 및 세입 확보방안

1.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연금개혁 등 제도개선 추진 현황

2.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가?

○ 세출 구조조정 원칙 및 방법은?

3. 조세 외에 추가적 세입 확보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가?

* 한국의 경우 국유재산 활성화, 공기업 매각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